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이뤄지도록 의무 명시〉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85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이뤄지도록 의무 명시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기관 의견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이뤄지도록 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죄 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u>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 ----- ----- ----- ----- <u>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u> ----- ----- ----- ----- -----.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회보는 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0조(벌칙) ① -----
--제3항-----

-.

② 제6조제4항-----

-----.

③ 제6조제5항-----

-----.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제2항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임.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¹⁾를 열람 ·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8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²⁾를 열람 ·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9호).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현행법 제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무분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³⁾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부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제2항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 제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할 경우(재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규정(의무)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제6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안 제10조가 안 제6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반할 때를 제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648 전원재판부 결정.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6조제2항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현행 규정 조문 구조상 현행법 역시 의무규정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